

# 階層別所得分布의推計와變動要因

朱鶴中

▷ 目次 ◇

- I. 序言
- II. 所得分布에 관한既存研究와推計方法
- III. 既存統計資料의制約와推計方法의모색
- IV. 基準年度에 있어서階層別所得分布의推計結果
- V. 所得分配變動의決定要因
- VI. 結論

## I. 序言

第2次世界大戰 이후開發途上國의經濟開發問題가經濟學의중요한政策課題로서浮刻되었다.經濟發展의當면과제에대한接近에있어서그力點은經濟發展의궁극적목표인國民福祉의向上을극히限定的으로규정한

筆者：韓國開發研究院首席研究員

1) 이터한見解를代表하는것으로Bardhan(1973), Fishlow(1972), Weisskoff(1970)參照。

2) UN이채택한60年代의第1次10個年開發期間(first development decade)의목표였던成長이第2次10個年開發期間에이르러成長과衡平으로변경된것은이터한政策의目標轉換이汎世界的의임을反映하고있다.

經濟成長에두고貯蓄投資의增大와非農業部門의雇傭增進을통한工業化過程으로서1人當國民所得의增大에注力하였다.70年代에이르러이터한經濟成長을통한發展에대한反省論의하나는,한국민경제가지속적으로성장함에따라成長의果實이점차擴散效果(trickling-down effect)로고루配分되어先成長後分配의實效를거둘수있다고假定하였으나60年代에상당한經濟成長의實績을나타낸많은開發途上國에서成長의果實이偏在하여國民多數가그惠澤에서疎外되거나오히려상대적貧困의深化로그들의福祉增進,나아가전반적인國民福祉의向上을沮害한다는것이다<sup>1)</sup>.이터한理論的假定에대한實證的反證이契機가되어近年에所得分配에관한理論的·實證的研究가擴大되고있을뿐만아니라經濟開發의政策的努力도成長과衡平의調和라는方向으로그軌道가修正되고있다<sup>2)</sup>.

60年代初의韓國經濟의成長實績은세계적으로公認되고있는바와같이대단히성공적

이었고 이러한 高度成長過程에서 韓國은 成長과 衡平을 매우 잘 調和한 것으로 여러 學者에 의하여 研究結果가 發表되어 있다(Oshima, 1970; Adelman, 1974; Mizoguchi, et al., 1976). 그러나 이러한 研究의 實證的 根據가 어느 開發途上國의 그것과 같이 根據資料의 信憑性이나 一貫性이 問題가 된다<sup>3)</sup>. 이러한 實證的 研究의 試圖가 資料上의 여러 가지 制約을 內包한 公刊된 統計資料를 選別的으로 이용하였고 推計方法이나 推計期間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分配狀態의 變化를 追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試圖된 研究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可用統計의 制約性을 감안하여 60年代에서 最近年에 이르는 階層別 所得分布를 推計하고 이를 토대로 高度成長에 따른 所得分配 樣相의 變化를 追跡하여, 둘째 이러한 所得分配의 變化를 招來한 分配決定要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所得分配樣相의 變化를 밝히기 위한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는 既存推計의 利用資料 및 推計方法의 再吟味와 資料의 制約 가운데 可能한 推計方法의 摸索으로 先行되어 있다. 所得分配의 變動要因에 관한 分析은 먼저 「타일」(Theil)指數의 構成要因分析(decomposition analysis)에 따라 部門間과 部門內의 所得隔差要因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결과를 招來한 여러 經濟的 下部要因을 「타일」要因分解과 관련시켜 考察하는 것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3) 1974年에 世界銀行과 「서섹스」(Sussex)大學校 發展問題研究所의 共同研究結果로 發刊한 研究報告書에도 신빙성이 희박한 資料에 근거한 分析의 有用性에 대하여 學者間에 論難이 많았던 것으로 脚註되어 있다(Ahluwalia, 1974, p.3).

## II. 所得分布에 관한 既存研究와 推計方法

韓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가 70年代 初부터 여러 國内外 學者에 의하여 試圖된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이러한 研究의 가장核心的인 部分은 所得分配의 樣相을 규정하는 所得階層別 所得分布(size distribution of income)의 推計이다.

따라서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의 優劣과 成敗는 可用資料를 活用하여 時系列+分位所得分布를 보다 正確하고 一貫性있게 推計하는 것에 左右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와 같은 推計過程과 그 결과의 重要性에 비추어 오늘날까지 發刊된 韓國의 所得分布의 推計過程과 결과를 要約·檢討함으로써 새로운 推計의 必要性과 推計方法의 發展에 參考로 삼고자 한다.

### 1. 既存推計의 概要

現時點까지 여러 學者에 의하여 推計, 發表된 階層別 所得分布를 要約하면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조구찌」(Mizoguchi)의 研究陣을 除外하고는 特定年度나 基準年度(bench-mark year)에 限定되어 있고 利用資料도 特別調查, 都市家計調查, 農家家計調查, 賃金調査 등이다. 이러한 研究結果의 基礎資料가 지니는 여러 가지 特性과 制約性은 구체적으로 다음 項에서 檢討될 것이나 이용된 資料에 따라 推計結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66~71年間에 걸친 「지니」(Gini)集中係數의 推計에서 「오시마」의 0.2650(1966年)이 가장 낮은 데 비하여 「미조구찌」 등의 1968年推計는 0.4251로서 가장 높다. 「지니」集中係數보다 敏感하다고 할 수 있는 十分位分配率(decile distribution ratio)은 최고 23.3/35.8(1966年)에서 최저 16.2/50.5(1968年)으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1966年부터 1971年間에 걸친 이와 같은 所得分配狀態의 變化는 高度成長에 따른 內生的要因이 작용한 變化일 수도 있으나 이期間에 나타난 經濟指標의 變化는 利用資料와 推計方法上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心證을 굳혀 주고 있다<sup>4)</sup>.

## 2. 既存推計의 利用資料와 方法論의 檢討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의 基礎資料가 되는所得資料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그 正確性을 기하기 어려운 統計로 看做되고 있다. 특히 統計調查活動이 體系的으로 整備되어 있지

않은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더욱 많은 統計上의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韓國도 그例外는 아니며 이로 인하여 所得分配와 같은 중요한課題에 대한 研究가 過去에 不振하였던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項에서는 앞에서 引用된 韓國에 관한 分配係數의 算出根據가 되는 所得의 階層別分布을 어떠한統計的特性을 지닌 資料를 이용하여 어떻게推計하였는가를 검토함으로써 推計結果의 限界와 여기서 試圖된 推計의 필요성을 밝혀두고자 한다.

가. 1966年「오시마」(Oshima) 推計

아시아諸國의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와의 關係를 實證的으로 分析하는 研究論文에서 「오시마」(1970)는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가 1966年에 實施한 所得과 消費行態에 관한 特別調查結果로써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布를 推計하였다. 이 推計는 韓國에 관한 階層別 所得分布推計의 첫 試圖였기 때문에 「포커트」(Paukert, 1973)에 의하여 世界各國의 所得分布比較分析에 引用되었고 이로써 韓國의 所得分配

〈表 1〉 既存推計의 利用資料와 推計結果

年度 또는 期間	推計者	利用資料	推計結果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
1966	「오시마」	特別調查結果	0.2650	23.3/35.8
1970	「아델만」	農家家計調查 賃金調查 「보리슨」諮詢報告	—	18/44
1970 1963~71	蔡 汝 奎 溝 口 敏 行 金 都 亨 鄭 英 一	所得稅資料 都市家計調查 農家家計調查	0.3836 0.3428(1965) 0.4251(1968)	17.5/45.2 19.3/42.8(1965) 16.2/50.5(1968)

資料：「오시마」(Oshima, 1970); 「아델만」(Adelman, 1974); 「채문규」(Chae, 1972); 「미조구찌」(Mizoguchi et. al., 1976).

4) 〈表 8〉 參照。

가 國際比較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衡平하다는 學界의 見解가 처음으로 形成된 契機가 되었다. 이러한 「오시마」推計의 중요성에 비추어 利用資料인 1966年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의 特別調查의 統計的性格을 검토해 보면 이용된 特別調查의 調查統計는 한마디로 말하여 調查統計로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여 當時 우리나라의 所得分布를 나타내기에 不適合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으로 都市 799 家口, 農村 971家口의 작은 標本數, 同年 1月부터 3月까지의 所得平均值를 취한데서 오는 季節性, 集計過程에서 不明瞭한 都市家口의 除外 등이다<sup>5)</sup>. 이와 같은 調查上의 問題點은 農村의 所得集中係數가 都市의 그것보다 높은 常識에 어긋난 결과를 招來하였을 뿐 아니라 全國的인 所得集中係數도 대단히 낮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國際比較研究에 있어서 比較對象國家의 統計上 制約을 하나하나 잘 알고 이를 分析에 감안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그래도 어느 정도 基礎資料의 制約을 檢討하는 세심한 注意가 요청된다.

#### 나. 1970年 「아델만」(Adelman) 推計

世界銀行과 「써세스」(Sussex) 大學校 開發問題研究所의 共同研究로 推進된 世界各國의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에 관한 研究(Cheney et al., 1974)에 「아델만」은 1970年 韓國의 所得分布를 階層別·機能別로 推定하였다. 推計過

5) 상세한 것은 Choo(1974) 참조.

6) 1970年 農業「센서스」에 의하면 全農家の 4%가 農業勞動者家口, 小作農家, 1段步未滿 耕作農家로 나타나 있으며 農家經濟調查의 耕作規模別 標本構成比率이 0.5町步未滿 農家가 현저하게 낮게, 0.5町步以上 農家는 높게 反映되어 있다(表 2 參照). 따라서 農家經濟調查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上向偏倚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程에 대한 說明은 公刊되지 않았으므로 同報告書의 附錄에 나타난 「아델만」의 論文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면 賃金所得分布는 賃金調查報告書에서, 農家所得分布는 農家家計調查에서, 非農業自營業者所得分布와 財產所得分布는 「모리슨」(Morrison)의 推計에서 資料를 綜合하여 推定하였다(Adelman, 1974, p.283).

農家經濟의 收支狀況을 파악하기 위해 實施되고 있는 農家家計調查는 標本選定過程에서 1段步 미만의 耕作農家, 農業勞動者家口, 小作農家 등을 除外하였고 標本調查對象과 母集團의 耕地規模別 構成比가一致하지 않는 등의 問題點을 안고 있으나<sup>6)</sup> 非農家에 比較한 農家家口의 相對的 同質性에 비추어 一貫性있게 蒐集되어 있다고 하겠다. 보다 根本의 问题가 있는 것은 勤勞者家口所得, 非農家自營家口所得, 財產所得의 階層別 分布의 推計이다. 먼저 勤勞者家口所得分布의 推計에 1970年 賃金實態基本調查를 이용하였는데 이 調查는 被雇傭者個人을 基準으로 한 賃金調查로서 階層別 所得分布의 分析單位인 家口調查가 아니다. 따라서 個人單位의 賃金調查資料를 家口單位의 所得分布資料로 換算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換算을 可能케 하는 實證的根據가 어느 研究를 통하여서도 確立되어 있지 않다. 家口單位의 所得分布는 家口의 最低生計를 유지하기 위하여 家口主 이외의 家口員이 就業하여 生計를 듣기 때문에 個人單位의 賃金所得不平等度가 낮을 것이豫想되는 한편 財產所得은 高賃金所得者에 集中될 可能性이 있어 그 修正值가 얼마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以外에도 推計者的 資料利用上의 誤謬, 賃金調查標本의 客觀性 등의 問題點이 指摘되어 있다(裴茂基, 1976).

「아델만」推計에 援用된 非農業自營業主와 財產所得의 所得分布는 世界銀行의 内部資料인 「모리슨」諮問報告書에 依存하였다. 이 報告書는 公刊되지 않아 그 자세한 推計過程에 대하여 具體的인 結果는 어려우나 現在 한국에서 實시되고 있는 어떤 調查로써도 自營業者所得과 財產所得의 分布를 객관적으로 推定할 수 있는 資料가 없는 實情에 비추어 많은 假定을 導入한 略算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自營業主 所得分布보다 더욱 근거가 희박한 것은 財產所得分布의 推定이다. 여기서 불분명한 것은 어떤 假定에 입각하여 財產所得을 所得階層에 配分한 것인지, 또는 財產所得者階層의 所得分布를 推定하였는가 하는 것이다<sup>7)</sup>. 前者の 경우 財產所得과 다른 所得을 特定한 家口의 所得으로 配定한다면 所得階層에 分類, 配分하기 어려운 問題가 있으며, 後者の 방법이라면 財產所得은 財產所得者에만 歸屬된다는 강한 假定이前提되어야 한다. 上述 한 두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財產所得分布를 概略的으로나마 推定할 수 있는 可用統計가 없으므로 그 信憑性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世界銀行과 「씨섹스」大學校의 共同研究의 一環으로 「아델만」이 推定한 韓國의 階層別·機能別 所得分布의 推計結果는 다른 많은 國家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不平等度가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고는 있으나 그 推計過程에서 現存하는 可用資料가 지닌 制約과 限界를 克服하기 위하여 많은 假定을 援用한 하나의 試算이라 하겠다.

7) 裘茂基 教授(1976)는 後者로 假定하여 財產所得資料의 制約와 誤認을 批判하였다.

#### 다. 1970年 蔡汝奎 推計

韓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實證的 推計로 널리 引用되는 階層別 所得分布의 하나는 租稅資料를 이용한 蔡汝奎의 推計이다(Chae, 1972). 租稅資料를 토대로 한 계층별 소득분포의 推計는 한 나라의 所得稅制度에 따라 크게 그 程度가 左右된다. 1970年 당시 한국의 所得稅制는 极히 限定된 高所得層에 한하여 綜合所得稅가 賦課되었고 大部分의 納稅者는 機能別로 分離된 所得源泉에 個人別로 所得稅가 徵收되었다. 이러한 資料를 이용할 때 留意하여야 할 점은 일반적인 租稅資料의 所得過小評價 경향은 물론 所得稅制의 特殊性에서 오는 資料의 制約性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을 指摘하면 첫째,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오늘날까지도 所得稅가 賦課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70年 당시 就業者의 약 50%가 稅制上の 特수성으로 인하여 除外되어 있다. 除外된 農業所得의 分布는一般的으로 非農業所得의 分布보다 不平等度가 낮다는 것을勘案하면 이 推計는 所得不平等에 대한 上向偏倚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綜合所得稅 對象者를 除外하고는 機能別 所得發生을 單位로 한 所得稅資料이기 때문에 동일한 個人이 勤勞所得과 賃貸料收入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는 2人 또는 2件으로 취급되어 集計된다. 따라서 綜合所得稅 課稅對象 이하의 高所得者數는 實제보다 적게 나타나고 集計된 數值에는 分離된 低所得者의 수가 많게 표시된다. 이와 같이 集計된 租稅資料의 性格은 分離課稅된 所得階層이 어떤 階層이며 어떻게 중복 처리되었느냐에 따라 所得不平等度에 대한 偏倚가 달라지나 綜合所得

課稅 대상자의所得占有率为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推計된所得不平等度를 誇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所得稅資料를 이용한所得分布는個人單位의階層別所得分布이지家口單位의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研究目的에따라個人單位의所得分布가分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階層別所得分布에 있어서는일반적으로生活單位인家口를 중심으로推計되고 있다。個人單位의所得資料에서家口當以外의就業者所得을家口主의所得에合算하는再集計過程을통하여家口單位의階層別所得分布는推定될 수 있으나우리나라의納稅者番號로써는不可能하다。우리가理論的으로알고 있는 것은貧困階層을除外한低所得正常家口일수록副次的所得比率이높고最高所得階層가운데課稅負擔을輕減시키기위한방법으로財產所得을家族名義로分散시킨다는 것이다。그리나後者の경우보다前者의頻度가많기때문에個人納稅資料에의한所得分布의集中度는높게推定되는傾向을띤다。

이상과같이볼때蔡汝奎推計는한국소득세제의특수성에크게影響을받아就業者的약50%인農業所得者が除外되고綜合所得納稅對象者(個人)와綜合所得納稅對象者が아닌階層에대하여는機能別所得源泉을單位로集計한租稅資料에의한所得分布이다。그러므로이推計는家口單位의所得分布와어떠한正의相關關係가있다는假定을前提로하여하나의參考資料로서의意義는있다고하겠다으나흔히引用되는바와같이무분별하게家口單位로의階層別所得分布의比較對象은될수없다。

라. 1963~71年 溝口敏行·金都亨·鄭英一  
推計

日本一橋大學校經濟研究所의所得 및富의分配에관한研究의一環으로서1963~71年間に 걸친家口單位所得分布가推計되었다(Mizoguchi, et. al., 1976).基礎資料로서는都市家計調查와農家家計調查를이용하고있다。推計方法은「모리슨」方式을補完한家口所得推定方法이라고說明되어있으며이推計의方法論上의長點은都市家計調查에결여된自營業主家口의所得資料를보완하기위하여農家와都市勤勞者家口를제외한기타家口의貯蓄과所得을推定하는데많은노력을倾注하였다.都市家計調查에自營業主家口所得이集計되어있지않기때문에上述한中央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의1966年調查資料로써商人階層과被雇傭者階層의消費函數를導出하고이를이용하여都市家計調查의기타家口의消費支出을所得으로換算하였다。이리하여農家家計調查의農家所得分布,都市家計調查의勤勞者家口所得分布,推定된self-employed家口所得分布로써전체와부분의所得分布를時系列로서계산하였다.

基礎資料의근본적인制約가운데이상과같은試圖는많은苦衷과노력이뒤따른힘든研究의결과로서높이評價되어야하겠다。그러나이미지적한바와같이1966年中央大學校社會科學研究所의調查結果는많은問題를내포하고있고이資料를이용하여推定된限界消費性向은俸給生活者家口의53.3%에비하여商人家口의95.1%라는筆者자신들이反問하는결과를그대로推計에이용하고있다(Mizoguchi, et. al, 1976, pp.266~7).뿐만아

니라 아래에 검토된 바와 같이<sup>8)</sup> 都市家計調查와 農家家計調查에서 除外된 家口에 대하여는 전혀 補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全體家口의 所得分布가 實際보다 좋게 推定되는 偏倚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都市家計調查가 採擇하였던 所得上限線을 留意하지 않았기 때문에 推計된 都市家口와 全家口의 時系列所得分布는 이의 영향을 받아 時系列上의 一貫性이 크게 沮害되고 있다<sup>9)</sup>. 그러므로 이 推計는 現存하는 都市와 農家家計調查資料를 토대로 하여 全家口 및 部門別 所得分布를 時系列로 推定하였다는 意義는 지니고 있으나 時系列의 一貫性이나 推計值의 代表性에 많은 制約이 내포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既存하는 韓國의 所得分布推計를 그 推計方法論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블 때 可用資料의 制約과 關聯資料의 부족으로 推計自體에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推計過程이 내포하는 問題點이 經濟學的·統計學的專門性 때문에 經濟學徒에 의하여 輕視되고 結果值만을 중심으로 所得分配狀態가 論議의 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社會開發의 戰略的要素로서 所得分配의 중요성이 크게 浮刻되는 現時點에 있어서 既存資料가 지닌 취약점을可能한 한 補完하여 韓國所得分布의 近似值만이라도 一貫性있게 推計比較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래의 試圖가 指向하는 바이다.

8) 本論文 Ⅲ의 1 참조.

9) 그 一例로서 「미조구찌」推計에서 都市家口의 「지니」係數가 1967년의 0.413에서 1968년의 0.523과 1969년에 0.519로 크게 변화하는 것은 1967년까지 所得上限線이 年間 50萬원이었다가 1968년에 年間 150萬원, 1969년에 年間 200萬원으로 변경된 것이決定의 要因이라 하겠다. 또한 上限線이 一定한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所得分布가 改善되는 偏倚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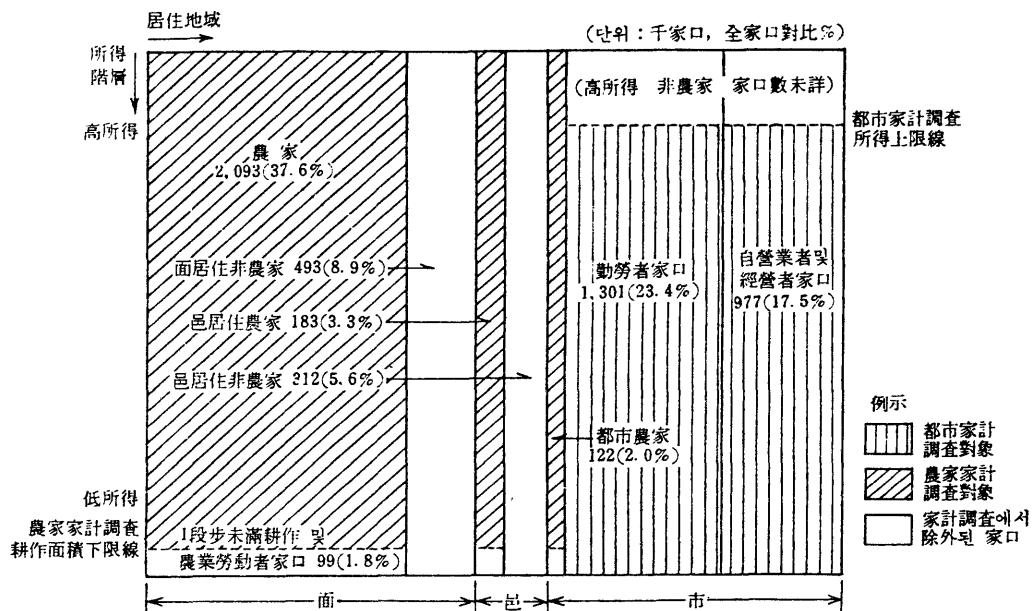
### III. 既存統計資料의 制約과 推計方法의 모색

#### 1. 可用統計의 性格과 問題點

階層別 所得分布는 일반적으로 家計調查의 결과를 토대로 推計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都市家計調查와 農家經濟調查가 각각 1963年과 1961年부터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두 家計調查의 性格과 利用上의 문제점을吟味함으로써 推計上 관련자료에 의한 補完의 必要性을 밝히고 推計方法의 摸索에 參考로 삼고자 한다. 可用統計의 性格과 制約을 檢討하는 데 있어서 調查對象家口의 選定과 標本單位의 決定에서 오는 調査의 代表性과 包括性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韓國의 家計調查의 標本數는 1977年에 대폭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都市家計調查의 약 1,500~1,800家口와 農家經濟調查의 약 2,500家口로서 다른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비하여 標本數가 매우 작고(Choo, 1974, pp.23~31) 이에 따라 標本誤差가 를 可能性이 있다. 農家家計調查는 韓國農家の 相對的 同質성을 감안하면 調査對象이 農家家計를 代表하는데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家口主와構成員의 職種이 多樣하고 地域的인 隔差가 심한 都市家口를 2,000 이내의 標本家口로써 代表한다는 것은 不適當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都市家計調查보다 더 좋은 都市家計標本調查가 실시된 바 없기 때문에 부득이 都市家計調查結果를 活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圖 1〕 地域別 家口主職種別 家口의 構成과 家計調查의 對象



資料：經濟企劃院, 『1970年 人口「센서스」報告書』  
農水產部, 『1970年 農業「센서스」報告書』

둘째로 標本家口調査의 母集團이 全國의 家口를 包括하여야 되나 現行 두 家計調査는 調査範圍와 對象에서 상당히 많은 家口를 제외하고 있다. 1970年 人口「센서스」결과를 두 家計調査의 母集團과 比較하여, 現行 調査對象에서 제외된 家口의 規模를 추정해 보면 [圖 1]과 같이 要約된다. 農家經濟調査에서 除外되는 것은 1970年 人口 및 農業「센서스」를 기준하여 農業勞動者家口 65,950, 無耕地 農家 20,209, 1段步 미만 耕地 農家 12,843 등 99千家口로서 總 農家の 약 4%이다. 非農家 中에서는 都市家計調査의 對象이 되는 都市俸給生活者家口와 自營業者家口를 除外한 邑의 312千非農家(全家口의 5.6%)와 面의 493千 非農家(全家口의 8.9%)가 除外되고 있다. 또한 1977년까지 都市家計調査報告書에 明示된 바와 같이 一定額 이상의 高所得家口는 調査對象에

서 除外되어 있으며 1970年的 所得上限線은 年間 200萬원으로 규정되었으나 이로써 除外된 都市家口數가 얼마인지 推定할 수 있는 資料가 없다.

세째로, 標本家計調査가 母集團인 全家口에 대해 偏倚敘는 代表性을 지니기 위해서는 標本의 經濟社會的 特性과 母集團의 그것이 相應되어야. 하나 두 家計調査는 상당한 偏倚(bias)의 가능성이 있다. 즉, 農家家計調査의 경우 上述한 段步라는 耕作面積의 下限線에서 오는 上向偏倚는 물론 農業「센서스」에 나타나는 耕作規模別 農家の 構成比에 비하여 農家家計調査의 그것은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0.5町步 미만 耕作 農家가 相對的으로 작은 比率이 標本으로 추출되고 0.5町步 以上 耕作 農家는 標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農家經濟調査의 결과로써 農家所得分布를 推定

하면 現實보다 農家의 所得分配狀態가 衡平되게 나타날 危險性이 있다.

또한 都市家計調查의 對象이 되는 勤勞家口主의 職種分布도 經濟活動人口調查結果와 비교할 때 상당한 偏差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都市家計調查는 家口主의 職種을, 經濟活動人口調查는 14歲 이상 經濟活動人口의 個人別 職種을 집계하였기 때문에 直接的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表 3>에 보듯이 서비스職種, 其他職種 등 低所得職種家口와 失業者家口가 상대적으로 작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標本抽出에 所得上限線이 設定되어 있기 때문에 標本構成上 所得不平等度가 낮게 나타나는 偏倚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 家計調查의 性格과 制約에 비추어 家計調查資料만을 토대로 階層別

所得分布를 推計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율의 家口를 제외하여 그 代表性이 缺如될 뿐 아니라 農家調查의 耕地面積의 下限線으로 都市家口보다 平均所得이 낮은 農家所得의 上向偏倚, 都市家計調查의 所得上限線으로 高所得家口의 例外로 인한 都市家口所得의 下向偏倚와 都市低所得職種家口의 過小評價 등으로 非現實的인 所得分布와 낮은 所得不平等度가 推定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現實에 가까운 階層別 所得分布를 推計하기 위하여는 可用資料를 가능한 한 活用하여 調査에서 제외된 家口의 所得을 推定 補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表 2> 1970年 農業「센서스」와 農家經濟調查의 耕作規模別 農家構成比의 比較

(단위 : %)

耕作規模 區分	0.5町步 미만	0.5~1.0	1.0~1.5	1.5~2.0	2.0町步 이상
農業「센서스」 <sup>1)</sup> (1)	31.92	34.54	18.69	8.10	6.75
農家經濟調查 (2)	23.05	37.63	20.76	10.00	8.56
차 이 (1-2)	8.87	-3.09	-2.07	-1.90	-1.81

註: 1) 1段步 미만 農家, 賃金農業勞動家口, 無耕地農家를 除外한 構成比임.

資料: 農水產部, 『1970年 農業「센서스』』, 제 1권~9권에서 합산.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書』, 1971, p.56.

<表 3> 都市家計調查와 經濟活動人口調查의 職種別 標本構成의 比較

	1965			1970			1976		
	都 家 計 調 查 (1)	市 經 濟 活 動 人 口 調 查 (2)	차 이 (1-2)	都 家 計 調 查 (1)	市 經 濟 活 動 人 口 調 查 (2)	차 이 (1-2)	都 家 計 調 查 (1)	市 經 濟 活 動 人 口 調 查 (2)	차 이 (1-2)
專門, 技術, 行政, 管理職	9.5	5.9	3.6	14.3	8.8	5.5	11.6	5.8	5.8
事務職	15.3	8.3	7.0	16.3	11.0	5.3	12.4	11.6	0.8
販賣職	28.7	24.8	3.9	29.1	22.9	6.2	30.3	20.0	10.3
서비스職	5.4	13.6	-8.2	8.4	12.1	-3.7	8.8	12.1	-3.3
其他 <sup>1)</sup>	35.2	33.9	1.3	27.7	37.7	-10.0	31.3	44.2	-12.9
失職	5.9	13.5	-7.6	4.2	7.5	-3.3	5.6	6.3	-0.7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生產 및 生產關聯從事者, 運輸裝備運轉士 및 單純勞動者.

## 2. 資料의 補完과 推計方法

階層別 所得分布의 新로운 推計方法은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既存推計의 缺陷을 留意하여 可用資料의 制約을 감안하면서 摸索되어야 한다. 여기에 試圖된 推計의 基本的인 接近方法은 調查의 性格上 여러 가지 制約은 있으나 都市家計調查와 農家經濟調查結果를 이용하여 關係된 可用資料로써 調查에서 제외된 家口의 所得分布를 추정·보완하는 것이다. 補完되어야 할 家口는 ① 耕地面積 1段步 미만의 農家, 小作人農家, 農業勞動者家口 ② 漁業從事者家口 ③ 所得上限線 이상의 都市高所得家口 ④ 邑·面居住의 非農業家口 ⑤ 都市失業者家口 등이다. 또한 都市家計調查에서 勤勞者 이외의 家口所得이 集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階層의 所得도 推定하여 補完할 필요가 있다. 都市家計調查에서 所得上限線이 間歇的으로 上向 調節되어 集中型 所得分布를 時系列로 推計하는데 一貫性이 缺如되므로 所得上限線의 상당한 조정이 있은 다음해인 1965, 1970, 1976年을 基準年度로서 採하였다.

### 가. 農·漁家所得分布

農家所得分布는 農家經濟調查結果를 그대로 이용하고, 全家口의 약 2%를 점하는 漁家所得은 1971年『漁業年報』의 결과로써 家口主 이외의 就業者를 감안하여 補完하였다. 耕地面積 1段步 미만의 農家와 小作人農家, 農業勞動者家口에 대한 資料는 전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全農家の 3.9%에 해당하는 이러한 農業低所得家口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推計된 農家所得分布에 農家經濟調查의 對象이

되는 最低所得 農家와 調查對象에서 제외된 農家間의 所得差異로 약간의 上向偏倚가 있을 것이다. 그 比重과 차이가 작기 때문에 推計結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農家經濟調查에 있어서 農家所得의 算出方法이 價格變動에 따르는 在庫增加로서 所得의 上向偏倚를 結果한다는 비판이 있다. 「아브라함」(Abraham, 1976)에 의하면 農家經濟調查의 在庫變動은 在庫評價時期의 單價의 차이로 인하여 資本利得을 포함하여 農家所得이 過大評價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農家經濟調查에 있어서 그 대부분은 經常價格으로 評價된 所得의 一部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2年 이상 된 在庫가 누적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말하면 前年度의 收穫이 모두 消費 또는 販賣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資本利得에 의한 所得의 過大評價가 發生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시도된 推計는 選定된 基準年度에 관한 것이며, 在庫가 豐凶作으로 인하여 2年 이상 累積되는 것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農家經濟調查에서 物量在庫가 集計되지 않기 때문에 在庫變動에 따른 所得을 修正하지 않았다.

### 나. 被雇傭者家口의 所得分布

被雇傭者家口에 대한 所得分布는 都市家計調查結果를 그 土臺로 하여 都市家計調查의 所得上限線으로除外된 高所得者家口의 所得, 都市家計調查에 標本比率이 낮게反映된 失業者家口의 所得, 그리고 邑과 面의 勤勞者家口所得을 推定, 補完하였다. 高所得被雇傭者家口의 所得은 적당한 利用資料가 없는 狀態에서 부득이 『國稅統計年報』에 發表된 都市家計調查의 所得上限線 以上의 所得者數와 所得額

에 관한 資料를 이용하였고 課稅者를 家口主로 假定하여 家口主 이외의 就業者所得을 勘案하여 高所得者 家口所得을 推定하였다. 都市家計에서 제외된 高所得者 家計所得을 租稅資料로써 推定·補完하는 可能性에 대하여 그 對象者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 資料를 이용치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Mizoguchi, et. al., 1976) 여기서는 비록 그 頻度는 租稅資料의 下向偏倚가 작용하여 非現實的으로 작게 잡힌다 하더라도 低所得層의 平均所得水準보다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를 勘案해 주는 것이 다소 나마 都市家計調查의 下向偏倚를 제거하는 利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推定에 反映하였다.

前述한 都市家計調查의 失業者家口比率과 經濟活動人口調查에 나타난 都市失業率의 차이는 都市家計調查結果로 推定된 都市家口所得分布의 最低所得階層의 頻度를 낮춤으로써所得의 不平等度를 부당히 낮게 하는 傾向이 있으므로 經濟活動人口調查에 나타난 失業率로써 失業者 家口數를 조정하고 家口主 이외의所得과 移轉所得으로써 失業者家口의所得을 推定하였다. 또한 [圖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都市 以外地域의 被雇傭者 家口所得分布는 이에 관련된 資料가 전혀 없으므로所得分布의 類型(distributive pattern)은 都市의 그것과 같다고 假定하고 서울特別市와 기타 都市의 차이를 比例的으로 邑과 面의 居住者에게 二段階로 적용시켜 推定하여 被雇傭者所得分布에 포함시켰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都市家計調查와 經濟活動人口調查의 결과에서 나타난 職種別構成比의 차이는 前者は 家口主를, 後者は 經濟活動人口를 대상으로 分類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調整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자료가 없어 都市家計調查結果의 타당성이 다소 의문시되나 失業者를 除外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失業者家口는 都市家口當 平均經濟活動人口數로써 調整한 後 家口主以外의 平均所得과 最低所得階層의 移轉所得을 勘案하여 失業者家口의 平均所得을 推定, 包含시켰다.

#### 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所得分布

階層別 所得分布를 既存資料를 이용하여 推計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所得分布이다. 이러한 類型의 家口는 性格上 零細商人으로부터 財閥企業의 經營主까지 다양한 家口主로 구성되어 있어서所得隔差가 被雇傭者 家口나 農家보다 격심할 뿐만 아니라 經營과 家計를 分離하기 어려워 所得自體도 調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都市家計調查는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에 대한 所得을 調査項目에서 除外하고 消費支出만을 集計하고 있다. 따라서 都市家口所得調查의 所得上限線以上의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所得은 물론 都市家計調查의 대상이 되고 있는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부터 推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推定을 가능케 하는 資料의 基礎調査가 所得을 集計하지 않기 때문에 이 階層의 消費支出로서 所得을 推計할 수 있는 消費函數를 誘導할 수가 없다. 이미 考察한 여러 學者の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에 이와 같은 可用統計의 不完全性이 根本적인 制約으로 작용하여 부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標本調查結果로서 상식에違背되는 이 階層의 消費函數를 誘導한 후 所得을 推定하는 試圖

까지敢行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서 試圖된 推計에서는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도 所得階層別로 被雇傭者家口와 같은 水準의 賦蓄을 한다는 假定 아래에서 被雇傭者의 所得階層別 平均消費性向으로서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消費支出을 所得으로 換算하는 方法을 채택하였다. 都市以外地域에 居住하는 自營業者 와 經營者家口의 所得은 被雇傭者家口의 경우와 같은 要領으로 地域間의 所得隔差를勘案하여 推定하였다. 또한 都市家計調查의 所得上限線 以上의 高所得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는 被雇傭者家口의 경우와 같이『國稅統計年報』에 集計된 所得階層別 所得額과 分布度數資料를 이용하였고 가구주 이외의 家口員 所得을 推定하여 合算하였다.

上述한 바와 같은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方法은 可用資料의 性格과 制約을 세밀히 검토한 뒤에 이를 關聯資料로서 可能한限 補完하였고 既存資料가 지니는 偏倚를 가급적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는데 意義가 있다. 물론 이 推計方法도 國稅統計資料가 지닌 下向偏倚의 문제점을 關聯資料로써 補完할 수 없어 都市家計調查의 所得上限線 以上의 高所得家口의 所得推定에 이 資料를 그대로 이용하였다던가 所得上限線 以下의 被雇傭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平均消費性向] 같고 서울과 기타 도시의 所得差異를 기타 都市와 邑과 面의 所得差異로 보는 등 여러 가지假定을前提로 하였다는 데에 推計方法으로서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是認한다. 그러나 都市家計調查와 農家經濟調查에서除外된 家口는 모두 포함시키려고 努力하

10) 十分位分配率은 上位 2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과 下位 40% 階層의 所得占有率을 對比한 것으로 Gini係數나 Theil指數에 비하여 敏感하며 具體的이다.

였으며 上述한 바와 같은 假定의 導入으로 補完資料의 活用은 推計를 더 改善할 수 있는 資料가 缺如된 가운데 次善의 方法으로 採擇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推計方法에 의한 階層別 所得分布는 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내는 하나의 近似值로서 意義를 지니고 一貫性 있는 時系列分析이 可能하다.

## N. 基準年度에 있어서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結果

上述한 바와 같은 推定方法으로서 基準年度로 채택한 1965年, 1970年, 1976年에 있어서 全國家口와 部門別로 農家와 非農家, 被雇傭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階層別 所得分布를 十分位로서 나타내면〈表 4～表6〉과 같다. 所得集中係數는 公式에 의하여 여러 가지 形態로 算出되나 集中係數 하나하나가 지니는 統計的 特性이 각각 다르므로(Atkinson, 1970), 그 중 대표적인 「지니」係數, 十分位分配率(decile distribution ratio)<sup>10)</sup>, 「타일」指數(Theil index)를 十分位分布의 所得占有率을 근거로 하여 算出하였다. 「타일」指數를 추가한 것은 이 指數가 部門間과 部門內部의 所得隔差要因으로 分解(decompose)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Theil, 1967).

### 1. 全國家口의 所得分布

〈表 4〉에 나타난 全國的 所得分布를 보면 韓國의 所得分布는 高度成長 가운데 相對的 인衡平을 維持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所得集中度를 記錄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總體的所得分配狀態를 나타내는 分配係數에 의하면 1965年에서 1970年에 이르는期間에 所得分布는 약간改善되었다가 1976年에 이르러 크게 惡化되었다. 즉, 1965年에 0.3439이던 「지니」係數는 1970年에 0.3322로 낮아졌다가 1976年에 0.3908로 높아졌다.

〈表 4〉 1965, 70, 76年 全家口 階層別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值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	1.32	2.78	1.84
2	4.43	4.56	3.86
3	6.47	5.81	4.93
4	7.12	6.48	6.22
5	7.21	7.63	7.07
6	8.32	8.71	8.34
7	11.31	10.24	9.91
8	12.00	12.17	12.49
9	16.03	16.21	17.84
10	25.78	25.41	27.50
計	100.00	100.00	100.00
「지니」係數	0.3439	0.3322	0.3908
「타일」指數	0.2263	0.2049	0.2505
十分位分配率	19.34/ 41.81	19.63/ 41.62	16.85/ 45.34

이러한 所得集中係數의 變化는 階層間의 相對的所得水準의 變化를 敏感하게反映하지 않는 결합이 있다. 1965年에서 1970年에 이르는 「지니」係數의 變化는 실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차이이나 이期間에 나타난所得分配狀態의 改善은, 最低所得階層이 最高所得

11) 이 推計를 중심으로 한 國際比較에 대하여는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第14章과 Choo(1978), pp.38~48 참조. 이러한 國際比較結果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는 주로所得分配가 國民所得概念의所得分布를 그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음을 看過한 데서 基因한다. 즉, 한국과 같은 二重構造의 經濟의 高利, 資本利得 등 國民所得concept에서 세외하는所得까지 포함시켜 購買力이란 所得으로서現實을 보는 데서 오는 차이이다.

階層에 대한 상대적 所得比率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대단히 현저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兩年度에 있어서 두所得階層의所得占有率을 비교하면 1965年에 最高十分位階層의所得占有率이最低十分位階層의 그것의 19.5倍이던 것이 1970年에 9.1倍로 低下하였다. 階層別所得占有率로 보면 1965~70年間의 「지니」係數의 低下는 最低所得階層의所得占有率이 增加한 基因한 것이다. 反面 1970~76年間의 全國의 階層別所得分布의 變化는 第7~10十分位까지의所得階層의所得占有率 低下와 上位30%의高所得層의所得占有率의增加에 基因하였으며 특히 下位30%의所得階層과 上位10%의所得階層에 있어서의相對的所得占有率의 變化가 주목할 만하다.

## 2. 部門別 및 職種別所得分布

### 가. 部門別所得分布

豫想되는 바와 같이 選定된 基準年度에 있

〈表 5〉 1965, 70, 76年 階層別 農家  
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值

十分位階層	1965	1970	1976
1	2.66	3.17	2.46
2	6.39	5.19	4.32
3	6.67	6.00	6.05
4	6.91	6.88	6.62
5	7.16	8.10	7.81
6	9.63	9.01	9.13
7	10.83	10.59	10.48
8	11.73	12.42	12.51
9	15.61	17.87	16.79
10	22.42	20.77	23.83
計	100.00	100.00	100.00
「지니」係數	0.2852	0.2945	0.3273
「타일」指數	0.1428	0.1318	0.1708
十分位分配率	22.57/ 38.03	21.24/ 38.64	19.45/ 40.62

어서 農家所得分布는 전반적으로 非農家所得分布나 全家口所得分布보다 좋은 편이다. 1965年 全家口의 「지니」係數가 0.344이고 非農家部門의 그것이 0.417인 데 비하여 農家の 「지니」係數는 0.285를 나타내고 있다. 下位 20% 所得階層의 相對的 所得占有率의 增加와 上位 2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의 相殺의 增減으로 1960年의 農家 「지니」係數는 큰 变동이 없다가 1976年에는 0.327으로 높아지고 있다.

非農業部門에 있어서 階層別所得分布는 相對的으로 심한 分布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1965年의 이 部門의 「지니」係數는 <表 6>의 左端과 같이 0.417로서 農業部門이나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所得分布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가 1970年에는 0.346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所得分配狀態의 변화는 十分位分配率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表示되는 바 同比率은 1965年的 14.05/46.95에서 1970年的 18.87/43.04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965~

70年間에 下位 4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4.8%「포인트」증가한 데 비하여 上位 20% 所得階層의 그것은 3.9%「포인트」가 減少하는 分配上改善이 있었다. 그러나 1976年에 이르러서는 非農業部門의 所得分布는 1965年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還元된 狀態가 되어 「지니」係數로서는 0.412, 十分位分配分率로서는 15.36/48.70으로 나타나 있다. 1965年과 1976年的 非農業部門의 階層別 所得分布上 차이점은 下位 20% 階層과 上位 10% 階層의 所得占有率의 增加가 中間階層의 所得占有率의 減少로 相殺되어 1976年에 다소 높다는 것이다.

#### 나. 職種別 所得分布

非農業部門의 家口를 被傭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로 구분하여 職種別 所得分布를 나타낸 것이 <表 6>이다. 基準年度에 나타난 被傭者家口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전반적인 所得分配의 特徵은 全家口의 그것과 類似한 형태이나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表 6> 1965, 70, 76年 階層別·職種別 非農家所得分布와 所得集中值

十分位階層	非農家家口			被傭者家口			自營業者 및 雇傭者家口		
	1965	1970	1976	1965	1970	1976	1965	1970	1976
1	0.22	2.56	1.64	0.28	2.59	2.08	2.24	2.58	1.15
2	3.02	4.67	3.56	1.90	5.39	4.50	3.44	4.06	2.41
3	4.98	5.33	4.61	5.31	6.32	5.53	4.06	4.59	3.36
4	5.83	6.31	5.55	7.00	6.46	6.40	5.48	6.39	4.43
5	7.36	7.45	6.56	7.68	8.85	7.50	6.93	6.96	6.01
6	8.29	8.41	7.83	9.72	8.94	8.59	8.85	9.26	7.79
7	10.43	10.02	9.52	11.00	10.16	10.15	10.44	10.59	9.91
8	12.92	12.21	12.03	13.32	12.19	11.89	15.47	13.55	16.57
9	18.56	16.29	18.56	16.67	14.84	15.48	17.95	18.01	22.27
10	28.29	26.75	30.14	27.13	24.26	27.87	25.14	24.02	26.11
「지니」係數	0.4167	0.3455	0.4118	0.3993	0.3043	0.3553	0.3838	0.3528	0.4490
「타일」指數	0.3398	0.2190	0.3027	0.3005	0.1747	0.2229	0.2856	0.2503	0.3302
十分位分配率	14.05/ 46.95	18.87/ 43.04	15.36/ 48.70	14.49/ 43.80	20.94/ 39.10	18.51/ 43.35	15.22/ 43.09	17.62/ 42.03	11.35/ 48.38

수 있다. 첫째 1965年에 있어서 두 職種의 所得集中度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70年과 1976年에 이르러 그 차이가 점차 擴大되어 가고 있다. 둘째로 1970年을 계기로 하여 두 職種의 所得分配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경향을 띠고는 있으나 그 變化의 폭이 被傭者家口의 所得分布의 경우 1965~76年間에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경우 1970~76年間에 더 심하게 나타나 職種別 分布의 變化가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다. 끝으로 前者의 所得分配狀態가 1965年에 비해 1976年에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에 後者의 所得分配狀態는 크게 惡化되었다.

職種別 所得分布에서 括目할 만한 것은 被傭者 所得分布中에서 下位 2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1965~1970年간에 대폭 증가한 반면 上位 20% 所得階層의 그것은 크게 減少하였다는 것이다. 衡平의 增進이라는 觀點에서 좋은, 이러한 所得階層間의 所得占有率의 變化는 주로 이 기간에 있었던 學歷 및 職種間의 賃金隔差가 擴大되지 않는 가운데 非農業部門의 失業率이 激減한 데서 그 important한 原因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965~70年間의 같은 職種의 所得分布가 惡化된 것은 上述한 要因에 反對現象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布는 全般的인 所得分布狀態의 추세에 따라 1965~70年間에 다소 改善되어 1965年的 0.384이었던 「지니」係數가 1970年に 0.353으로 低下하였다가 1970~76年間에 가장 두드러진 增加로 0.449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基準年度에 있어서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結果가 나타내는 所得分配狀態의 추세는 既存하는 推計의 그것에 비하여 다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既存推計와 비교할 수

있는 1965~1970年간의 所得分配狀態는 이 推計結果에 의하면 다소 改善되는 추세가 있으나 時系列로 推計된 「미조구찌」(Mozoguchi-Kim-Chung, 1976)의 推計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惡化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推計方法에 있어서 前者에 비하여 後者は 1965年に 달하였던 非農業失業者를勘案하지 않고 都市家計調查資料에만 依存하였고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所得推定에 推計者 스스로가 의문을 던진 특이한 消費函數에 依存하였으며 또한 8% 이상되는 都市 이외 지역에 居住하는 非農業家口에 대한 調整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最低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1965년에 이 推計에 의하면 1.32%인데 비하여 「미조구찌」의 推計는 3.27%로 推定된 反面, 最高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도 29.88%로 상당히 높게 推計되어 있다.

이 推計에 있어서 最高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은 1970년 「아델만」推計와 「미조구찌」推計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蔡汝奎의 租稅資料에 의한 個人所得分布의 上位 10% 所得階層占有率 29.0%에 비하면 비교된 두 推計의 같은 階層의 所得占有率이 높게 推定되었을 可能性이 많다. 그 이유는 家口所得分布에 비하여 個人所得分布의 所得集中度가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租稅資料에 의한 個人所得資料는 所得集中度가 비교적 낮은 農家所得이 除外되었기 때문에 그 可能性이 더욱 높다. 따라서 上位 10% 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이 蔡汝奎推計보다 낮은 이 推計의 結果가 「아델만」이나 「미조구찌」의 推計보다 妥當性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 V. 所得分配變動의 決定要因

上述한 바와 같은 基準年度에 있어서 所得分配의 變動은 같은 期間에 動態的으로 變化한 여러 가지 長短期的 經濟要因에 의하여 작용된 결과이다. 이러한 變動要因을 紛明하기 위하여 먼저 所得分布에서 算出된 「타일」(Theil)指數의 要因分解(Theil decomposition)를 試圖하고 이를 중심으로 期間內에 所得分配와 관련된 經濟的 要因의 變化를 考察하기로 한다.

### 1. 「타일」指數의 要因分解

所得集中度를 나타내는 「타일」指數의 特징은 所得集中度를 部門間과 部門內의 所得隔差要因으로 分解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주어진 어떤 情報(message)가 전달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事件(event)의 不確實性이 를수록  $h(x)=\log \frac{1}{x} (0 \leq x \leq 1)$ 로 표시되는 情報價值(information content)가 커진다는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期待值를 구하면  $H(x)=E[h(x)]=\sum_i x_i h(x_i)=-\sum_i x_i \log x_i$ 로 되는데 이를 그대로 所得集中度測定에 採用하였다. 즉  $y_i$ 를 所得比率이라 하면 ( $0 \leq y_i \leq 1$ ,  $i=1, 2, \dots, N$ ),  $H(y)=\sum_i y_i \log \frac{1}{y_i}$ 로 되어 所得이

완전히 均等할 때  $(y_i=\frac{1}{N})$ ,  $H(y)=\log N$ 이고 完全히 不均等할 때  $(y_i=1)$ ,  $H(y)=0$ 이므로 「타일」指數의 公式은  $TI=\log N-H(y)=\sum_i y_i \log Ny_i$ 로 變形되어 完全均等일 때  $TI=0$ , 完全不均等일 때  $TI=\log N$ 으로서 所得集中度의 두 極限值를 나타낸다. 「타일」指數를 分解하면  $Yg$ 를  $g$  部門의 所得比率,  $N_g$ 를  $g$  部門의 人口比率이라 할 때  $TI=\sum_i y_i \log Ny_i=\sum_g Y_g \log \frac{Y_g}{N_g/N}+\sum_g Y_g \left( \sum_{i \in g} \frac{y_i}{y_g} \log \frac{y_i/y_g}{1/N_g} \right)$ 로 되어 前項은 部門間의 所得集中度를, 後項은 部門內의 所得集中度를 나타냄으로써 所得集中度의 要因이 分解된다. 이 公式을 適用하여 1965, 70, 76年의 所得分布에서 算出된 「타일」指數를 分解한 結果는 〈表 7〉과 같다.

〈表 7〉 「타일」指數에 의한 所得集中要因分解

	1965	1970	1976
部門間의 所得集中要因	8.09	12.40	5.99
部門內의 所得集中要因	91.91	87.60	94.01
第1部門(農家家口)	(35.97)	(24.50)	(24.59)
第2部門(被傭者家口)	(33.80)	(28.89)	(30.90)
第3部門(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22.14)	(34.21)	(38.52)

基準年度에 있어서 「타일」指數의 要因分解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들면 첫째, 所得分配狀態의 90% 內外를 部門內의 所得集中이 설명하고 있으며 部門間의 隔差는 1965年과 1970年에 10% 내외, 1976年에 약 6%만을 설명하고 있다<sup>12)</sup>.

둘째, 農家部門의 部門內 隔差要因은 1965年 所得集中度의 약 36%를 설명하였으나 점차 그 比重이 減少하여 1970年과 1976年에는 약 25%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農家部門要因分解의 결과는 農家所得分布의 所得集中度의 趨勢와 相反되는 듯한 감이 있으나 要因分

12) Theil指數의 要因分解에서 部門間의 所得隔差가 10% 內外밖에 설명 못한다는 것은 外國의 事例에도 나타나 있다. 例로서 Mangahas(1975)

解에서 農家部門內의 所得集中이 寄與한 比率의 減少는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르는 全家口數에 대한 農家家口比率의 감소에 基因한 것이다. 1965年 農家家口의 比率은 55.5%였으나 高度成長을 뒷받침한 工業化過程에 따라 1970年에는 45.7%, 1976年은 36.5%로 크게 減少하였다.

세째, 被傭者家口部門의 部門內 隔差要因은 1965年의 33.8%에서 1970年에 28.9%로 減少하였다가 1976年에 30.9%로 增大하고 있다. 이 러한 部門內 要因의 變化는 이 部門의 所得集中度와 相對的 比重의 變化에 基因한 것이다.

끝으로 1970年부터 部門內의 所得集中要因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部門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이다. 1965年에서 1970年에 이르는 部門內 要因의 增加는 이 部門의 家口數와 相對的 比重의 增加에 주로 基因되고 1970~76年間의 增加는 이 部門의 所得分配의 惡化에 基因한 것이었다.

## 2. 所得分配決定의 下部要因

「오시마」(Oshima, 1970)는 一國의 所得分配狀態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서 여러 가지 長短期의 歷史的 經濟的 社會的 制度의 要因을 들고 있다. 利用資料와 推計方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韓國의 所得分配狀態가 外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良好하다는 結論에 到達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特殊한 歷史的 背景으로 人的·物的 富의 分布가 相對的인 衡平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Choo, 1975). 换言하면 日帝統治下에서 人的·物的 資本의 蓄積規模가 미미하였고 해방후 60年代初에 이르기까지 6.25動亂의 人的·物的 피해와 2次

에 걸친 土地改革, 不正蓄財還收, 農村高利債整理 등 一連의 富의 再分配措置는 富의 集中抑制를 통한 相對的 衡平에 크게 寄與하였다. 解放以後 教育機會의 폭발적인 擴大는 人的資源形成에 크게 寄與하였으나 비교적 그 機會가 어느 階層에게나 널리 주어졌고 또한 그 퇴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人的資源의 偏重에서 오는 階層間 所得隔差를 誘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要因과 더불어 所得分配狀態에 安定的 要因으로 작용한 것은 상대적으로 所得分布가 좋은 農業部門의 比重이 커고 低米價政策과 農地所有上限線으로 耕作規模別 農家分布가 크게 變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背景을前提로 하여 1965年부터 所得分配와 部門間內 隔差要因變化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經濟的 下部要因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 가. 1965~70年間의 作用要因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1965~70年間의 所得分布는 전반적으로 약간 改善되었다. 이러한 所得分配狀態의 變化는 여러 가지 相反되는 要因의 力學的 관계의 결과라고 하겠다.前述한 바와 같이 이期間에 나타난 所得分配樣相의 變化는 被傭者部門의 所得分配의 현저한 改善, 農業과 非農業部門間 所得隔差의 擴大,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部門의 所得分配惡化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期間에 被傭者部門의 所得分配의 改善은 <表 8>과 같이 60年代 勞動集約의 高度成長에 따른 非農家失業의 대폭 減少가 職種別 또는 學歷別 賃金隔差의 擴大를 수반하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 1971年 이전의 賃金隔差에 대한 統計資料가 없으므로 職種別·學

歷別 賃金隔差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賃金隔差의 擴大現象이 1974年 이후에 나타났고 60年代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임금격차는 擴大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에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른 農家家口의 相對的 減少 가운데 1965年の 13.5%에서 1970年の 7.4%로의 非農業失業率의 激減은 成長과 衡平의 調和를 이룬 가장 큰 要因이라고 하겠다.

農家部門의 所得分配는 相反된 要因, 즉, 零細農家の 農外所得의 增大, 農業失業率 및

〈表 9〉 1965~76年間 所得分配에 대한  
作用要因

(단위: %)

作用要因	1965	1970	1976
<b>&lt;農業部門&gt;</b>			
· 全家口에 대한 農家比率	55.5	45.7	36.5
· 都市勤勞者家口平均所得에 대한 農家平均所得 比率	99.7	67.1	100.4
· 耕地面積 0.5정보 미만 農家의 農業所得 比率	58.9	50.8	56.5
· 耕地面積 1.5정보 이상 農家比率	15.5	18.6	17.7
· 農業失業者比率	3.1	1.6	1.0
· 農業不完全就業者 比率(週當 18시간 미만)	6.2	4.7	2.0
<b>&lt;非農業部門&gt;</b>			
· 全家口에 대한 被傭者家口 比率	32.3	35.2	41.2
· 非農業失業者 比率	13.5	7.4	6.3
· 非農業 不完全就業者 比率(週當 18시간 미만)	1.3	0.8	0.3
· 賃金隔差(國卒基準 大卒者 給與比率)	—	330.7 (1971)	425.4
· 賃金隔差(全職種平均에 대한 行政管理職 급여 비율)	—	270.9 (1971)	343.6
· 全家口에 대한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 比率	12.2	19.1	22.3
· 200인 이상 제조업체 비율	1.7	2.9	5.9
· 200인 이상 제조업체 生產額占有率	54.4 (1966)	69.8	77.5
· 200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원 비율	39.8 (1966)	51.0	62.4

資料：經濟企劃院, 『主要業務指標』, 1978.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經濟企劃院, 『鑄工業「센서스」報告書』

勞動廳, 『賃金實態調查報告書』

不完全就業率의 減少 등의 有利한 要因과 農家比率의 相對的 增加와 農家의 所得水準의 相對的 低下 등 不利한 要因이 相殺되어 農業所得分配는 큰 變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都市勤勞者家口平均所得에 대한 農家平均所得의 현저한 減少는 「타일」指數의 要因分解에 나타난 바와 같이 部門間의 所得隔差를 擴大시켰다.

可用統計의 制約으로 가장 分析이 어려운 部門은 自營業者와 經營者家口部門이다. 產業構造의 變化에 따라 이 部門의 相對的 比重이 1965~70年間에 크게 擴大되었다. 이러한 傾向을 나타내는 代變數로서 類推하기 위하여 鑄工業「센서스」에 나타난 雇傭者 200名 이상 製造業體의 生產額과 雇傭占有率을 보면 1966年에 54.4%와 39.8%이던 것이 1970年에는 69.8%와 51.0%로 대단한 伸張이 있었다. 이러한 大企業의 相對的 擴大와 아울러 같은 期間의 대폭적인 家口數增加는 零細自營業者の 커다란 增加와 部門內 階層間의 所得隔差의 擴大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가장 比重이 크고 相對的으로 所得集中度가 낮은 農家部門의 中立的 影響과 雇傭機會의 擴大에 따라 그 比重이 커진 被傭者 部門의 所得分配의 커다란 改善은 이러한 所得不平等要因을 相殺시키고 전반적인 所得分配의 改善을 結果하였던 것이다.

#### 나. 1970~76年間의 變化要因

1970~76年間의 高度成長은 1965~70年間의 그것에 비하여 所得分配라는 觀點에서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所得分配狀態의 惡化를 超來하였다. 이 期間에 나타난 所得分配改善에 寄與하는 要因으로서는 1974年 이후에 나타난 高米價政策에 의한

都農間의 상대적 소득격차의 解消와 相對的으로 약간의 失業率 및 不完全就業率의 減少뿐이며 그以外의 要因은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方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期間의 分配上 衡平을 후퇴시킨 중요한 作用要因은 첫째, 被雇傭者家口部門에서 1974年頃에 나타나기 시작한 職種別 및 學歷別 賃金隔差의 현저한 擴大이다. 1970年代에 이르러 失業人口의 흡수가 限界에 달하고 產業構造와 經營組織이 고도화됨에 따라 高學歷者 및 經營管理層 등 高級人力의 需要가 增大되고 이에 따라 國民學校卒業者에 대한 紙與를 基準으로 한 大學卒業者의 紙與水準이 1971年の 3.3倍에서 1976年の 4.3倍로, 全職種의 平均紙與에 대한 行政管理職紙與水準이 1971年の 2.7倍에서 1976年の 3.3倍로 대폭 증가하여 被雇傭者部門 내부의 所得隔差를 擴大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鎏工業「센서스」資料에 의하면 종업원 200名以上의 大企業體數가 1970~76年間に 1970年の 2.9%에서 1976年の 5.9%로 크게增加하고 企業集中現象도 계속深化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大企業의 經營者家口와 零細自營業主家口와의 所得隔差는 더욱 擴大되는 것이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하겠다. 물론 大企業體數의增加는 大企業의 合併과 系列化로 財閥化하는 傾向에 비추어 이에相應한 大企業 經營主의 增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할 경우에 大企業 經營主와 零細自營業主의 所得隔差는 더욱 擴大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이期間에 이部門內의 所得隔差가 「타일」指數의 要因分解에 가장 큰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세째, 지속된 高度成長에 따른 급격한 產業

構造의 變動은 상대적으로 部門內 所得隔差가 심한 雇傭者와 被雇傭者家口의 比率이 증대하였고 1965年に 全家口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農家家口가 1976年에는 36.5%로 激減하였으며 이러한 급격한 構造的 變化는 한 국민 경제가 지니는 所得分配上 衡平의 安全裝置(built-in stabilizer)를 크게 弱化시키므로 所得分配의 惡化를 防止하기 위하여는 非農家部門의 部門內 所得分配의 改善으로 相殺하는 노력이 備注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要因以外에도 1970~76年期間에 나타난 所得分配에作用한 要因으로서 零細農家の 農外就業機會의 減退가 分配의 惡化에, 失業者와 不完全就業者의 吸收가 分配의 改善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나 중요한 要因으로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1970年 이후 所得集中度의 가장 큰 說明要因은 自營業者와 經營者家口部門內의 所得集中이다. 이部門은 1965年度 이후 全家口數에 대한 比率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部門의 所得集中度가 近年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65年に 이部門의 家口가 차지하는 比重은 12.2%에 불과하였으나 약 10年간에 10%「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이部門의 「지니」係數도 1970年の 0.353에서 1976年の 0.449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所得分配樣相의 變化는 60年代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經濟的・構造的 變化를 含蓄性있게 나타내고 있다. 韓國과 같은 高度成長에 따르는 급속한 產業構造의 变化는 部門間 比較에서 상대적인 衡平을 유지하고 있는 農家部門의 상대적인 비중 減少와 非農家比重의 상대적인 증가로 전반적인 所得分配를 惡化시키는 傾向을 초래한다. 특히 非農家 중에서도 自營業者와 經營

者家口의 증가와 그二重的構造에서 오는部門內의所得隔差는 70年代後半 이후의所得分配를 더욱惡化시킬潛在的危險要素가 될可能性이크다. 따라서經濟成長에 따르는產業構造의變化는成長과衡平을相衝하게하는 한原因을이룬다.

「타일」指數의要因分解는分配問題로서흔히文獻에서지적되고있는都·農間 또는地域間所得隔差의중요성을反證하고있다. 물론이研究의對象이된기간은高米價政策이奏效하여農家所得의向上으로部門間의隔差要因이1976년에낮게나타난것도사실이나分配問題의核心的課題는어디까지나部門內의高所得者와低所得者와의所得隔差를解消하는데있으며어느地域과部門에低所得이나高所得階層이集結되어있는것은아니다.그러므로衡平을造成하기위한政策의力點은部門內隔差가심한部門의低所得階層의所得增大로서部門內의所得隔差를완화시키는데두어야할것이다. 이러한觀點에서所得分配의改善을위한政策手段은1次의으로自營業者및經營者家口間, 2次의으로는被傭者家口間의所得隔差緩和에그實效를거둘수있도록處方되어야하겠다.

## V. 結論

1965, 70, 76년의韓國의階層別所得分布는많은開發途上國에비하여상대적衡平을유지하면서所得分布狀態는1965~70年間에는약간改善이되었다가1970~76年間에는惡化되는趨勢를나타내고있다.前期의所得分配의改善은勞動集約的高度成長에힘입은非

農業失業者の大幅減少로인한被傭者家口部門所得隔差의緩和에기인하였고後期의後退는自營業者및經營者家口部門과被傭者家口部門의所得隔差가擴大된데기인하고있다.이期間에일어난所得分配의變化를感應度(sensitivity)가낮은「지니」係數가「타일」指數의增減으로써識別하기에는不充分하며所得分配의變化는最低所得階層과最高所得階層間의상대적所得隔差의변화로써吟味되어야한다. 이러한觀點에서1965~70年間의所得分配의改善을보면1965年に最高所得十分位階層의所得占有率이最低所得十分位階層의20倍이던것이1970年に9倍로크게低下하였고1976년에는15倍로다시增加하고있다.

「타일」指數의要因分解에의하면部門間所得隔差의說明力은1970年に12.40%로가장컸으나어느選定된比較年度에있어서도重要한要因으로작용하지않고있다.所得不平等度의決定的要因은部門內의所得隔差이며高度成長에따르는產業構造의高度화와經濟的下部要因의변화로인하여比較年度에따라部門內隔差를설명하는部門의重要度가변화하고있다. 1965年所得分配에가장크영향을미친部門內所得隔差는農家部門의그것이었으나점차그重要度가非農業部門으로이행하여1976년에가장큰部門內所得隔差의決定要因은自營業者및經營者家口部門에서기인되고있다. 이와아울러1970年이후에나타나고있는被雇傭者家口部門의部門內所得隔差의擴大傾向은成長과衡平의調和를추구하는데주목되어야할변화라고하겠다.

上述한바와같은階層別所得分布의變化와要因分解의결과와관련된중요한經濟的下部要因을들면1965年的所得分布는歷史的特殊性으로인하여人的·物的富가상대적으로

로集中이 덜된有利한與件下에서 全家口의 56%를 占有한 農家の所得分布와 이에 따른相對的으로 낮은 不平等度에 의하여支配의 영향을 받았으며 높은 非農業失業率과 不完全雇傭率이 沮害要因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에 나타난所得分布의改善은雇傭機會의擴大에 따른 대목적인 非農業失業率과 不完全就業率의 減少, 小規模農家の 農外所得增大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 기간에 大企業體, 小規模農家, 自營業者 및 經營者家口의 量的擴大와 農家平均所得의 相對的低下가 있었으나 改善要因을 다소相殺하는데 불과하였다. 70年代前半에는 產業構造의高度化에 따라所得集中度가 상대적으로 높은 非農業部門의比重이 높아지고 經濟活動人口의 큰增加로失業 및 不完全就業人口의吸收가不振한 가운데 學歷別 및 職種別 賃金隔差가 크게擴大되어被雇傭者家口의所得分布가惡化되었고 이와 아울러大企業의 量的擴大와集中傾向의強化로自營業者와經營者家口間의所得隔差가 대단히넓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인所得分布狀態의後退를결과하였다.

이상과 같은所得分配의趨勢와變動要因을前提로 하면成長과衡平의調和라는觀點에서韓國經濟의 實績(performance)은 지난 10餘年間에 있어서所得分配狀態의變化로서評價될것이아니라앞으로 5~10年間에 걸쳐衡平의沮害要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좌右될 것이다. 계속되는工業化過程에 따라衡平의造成要因이었던 農業部門의比重은 더욱輕減되는反面,所得隔差가 심한非農業部門 특히自營業者 및經營者家口의比重이增大하고失業人口의吸收로서所得分配를改善하는데는 그限界가있으며經濟規模의擴大에 따라職種間 및學歷別賃金隔差가深化될 가능성이크다. 뿐만아니라人的資本形成의手段이되는教育制度와機會,富의蓄積과分布도所得分配를沮害할위험성을지니고있다. 높은增加率이예상되는勞動力を吸收할수있는高度成長을持續하면서이러한衡平沮害要因을抑制하는衡平促進要因을造成하는것이앞으로의重要한政策課題가된다.

끝으로上述한分析은現實의可用資料의 커다란制約 아래家計調查資料를 가능한한補完한推計를 토대로하였다. 이와같은推計過程에서여러가지假定도導入하였고관련자료를家計調查資料에援用하였다. 따라서設定된假定과利用資料는相反된偏倚를내포할 가능성이있으며이推計가內包하고있는缺點이라고하겠다. 그러나推計方法의一貫性을유지하면서60年代中半 이후의韓國의所得分配狀態를不完全하나마現實에가까운近似值로서推計하려는意圖的努力을傾注하였고所得分配에관한研究에하나의始發點을提供하였다는례이推計와分析의意義를찾을수있다.

## ▷ 參 考 文 獻 ◇

裴茂基, 「아델만의韓國所得分配平等論檢討」,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經濟論集』, 第15

卷第4號, 1976. 12, p.423~438,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

- 91年』, 1977.
- Abraham William I., *Observations on Korea'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tatistical Base*, April 1976 (Mimeo graphed).
- Adelman, Irma, "Redistribution with Growth: Some Country Experience—South Korea," in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1974.
- Atkinson, A.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 Bardhan, P.K. "On the Incidence of Poverty in Rural India in the Sixti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February 1973.
- Chae, Moon-Kyoo, "Income Size Distribution for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Working Group Seminar on Income Distribution, Manila (Mimeo graphed), January 1972.
- Chenery, Hollis 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Choo, Hakchung, *Review of Income Distribution Studies: Data Availability and Associated Problems for Korea, the Philippines and Taiwan*, Monograph 7406,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4.
- \_\_\_\_\_,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Seminar*, (Vol. I), Tokyo: JERC & CAMS, July 1975.
- Choo, Hakchung, and Daemo Kim, *Probabl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Over Time and By Sector*,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November 1978.
- Fishlow, A., "Brazilia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y 1972.
- Institute of Social Science, Chung-Ang University, *Income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 in Korea*, 1966 (Seoul: Chung-Ang University).
- Jain, Shail,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 Compilation of Data*, the World Bank, 1975.
- Mangahas, Mahar, "Income Inequality in the Philippines: A Decomposition Analysis," Vol. I.
- Mizoguchi, Toshiyuki, Do Hyung Kim and Young Il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XIV, No. 3, September 1976.
- Oshima, Harry T.,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 XV, No. 2, 1970.
- Paukert, Felix,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Development: A Survey of Experi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XVIII, Nos. 2-4, 1973.
- Theil, Henry, *Economics and Information Theory*,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 1967.
- Weisskoff, R.,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Puerto Rico, Argentina and Mexico",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ember 1970.